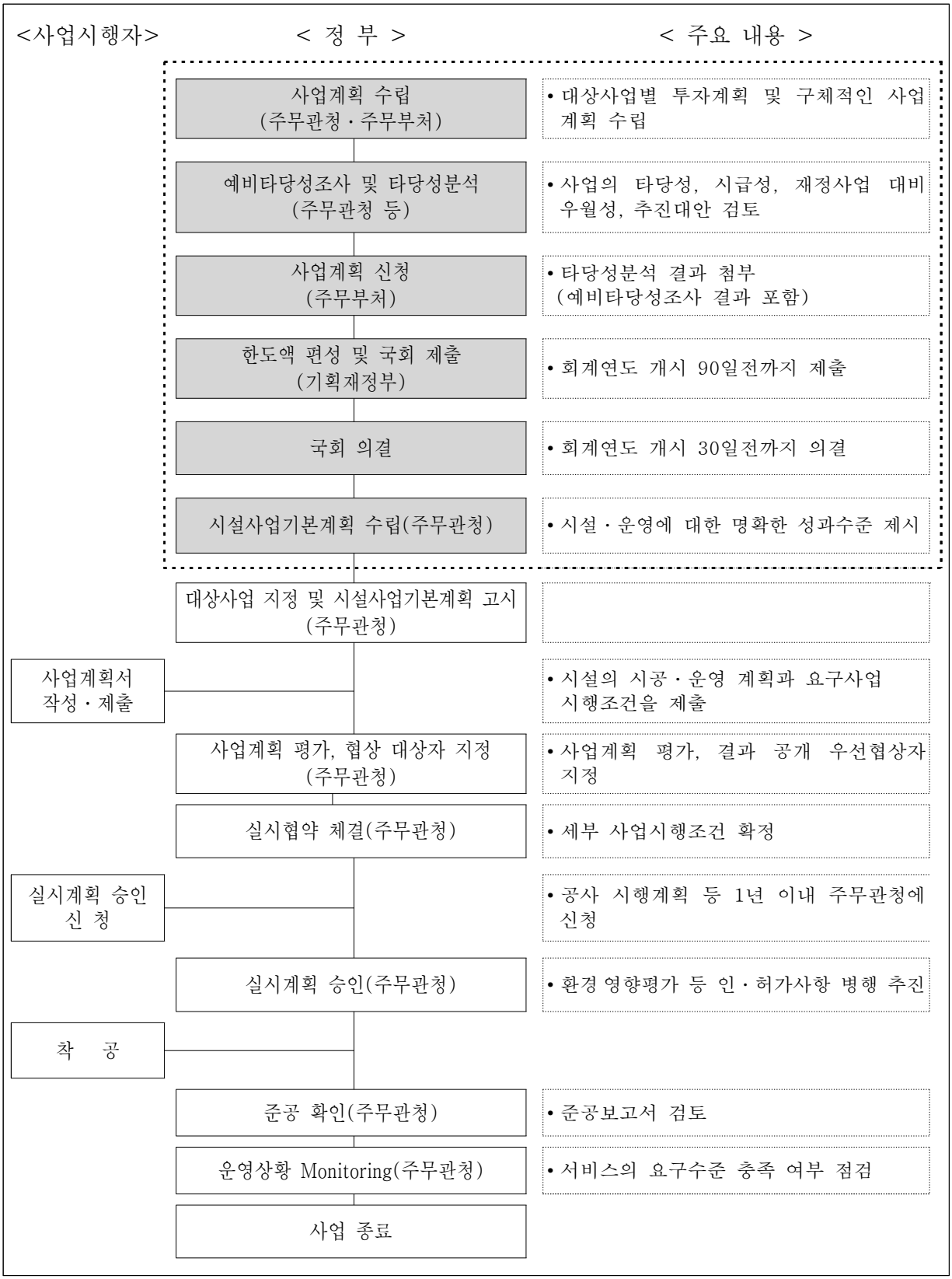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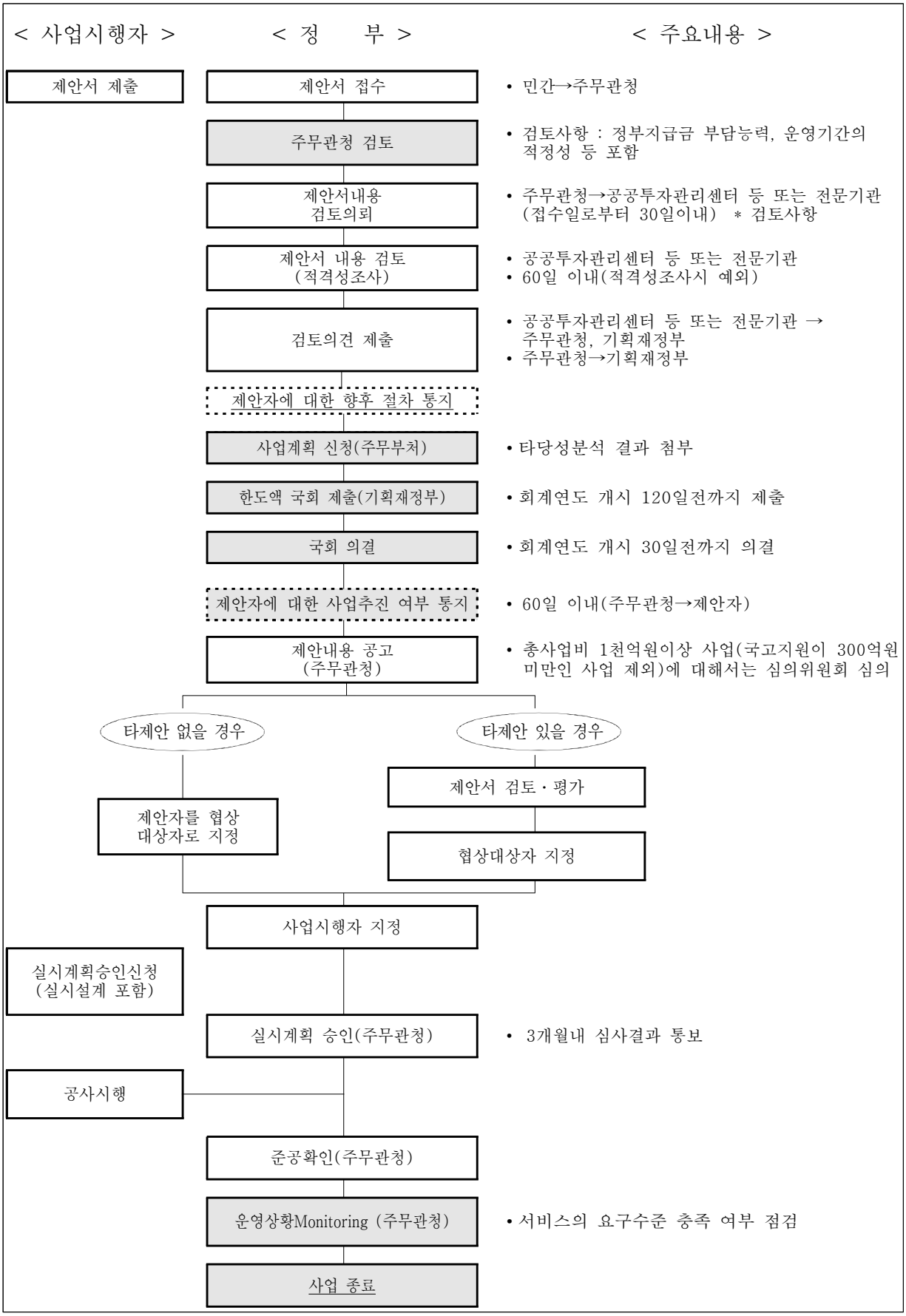
붙임1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절차**

① 정부고시사업



② 민간제안사업


< 사업시행자 >
< 정 부 >
< 주요내용 >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 민간→주무관청
주무관청 검토
• 검토사항 : 정부지급금 부담능력, 운영기간의 적정성 등 포함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 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등 또는 전문기관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검토사항
제안서 내용 검토 (적격성조사)
•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또는 전문기관
• 60일 이내(적격성조사시 예외)
검토의견 제출
•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또는 전문기관 →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 주무관청→기획재정부
제안자에 대한 향후 절차 통지
사업계획 신청(주무부처)
• 타당성분석 결과 첨부
한도액 국회 제출(기획재정부)
•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제출
국회 의결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
제안자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 통지
• 60일 이내(주무관청→제안자)
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
• 총사업비 1천억원이상 사업(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사업 제외)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타제안 없을 경우
타제안 있을 경우
제안서 검토·평가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
• 3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공사시행
준공확인(주무관청)
운영상황Monitoring (주무관청)
• 서비스의 요구수준 충족 여부 점검
사업 종료